

(2010. 4. 12)

농약관리법 개정 법률 공포

농약 판매기록 의무화, 위해성 농약 회수·폐기 등 농약안전관리 강화

농약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(요약)

현 행	주요 개정내용
○ 살균·살충·제초의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만 농약으로 규정	○ 농약활용기자재 제도 도입(제2조4호 등) -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등을 농약활용기자재로 정의함
○ 위해성이 판명된 농약에 대한 회수·폐기 규정 없음	○ 직권취소 농약에 대한 회수·폐기(제7조, 제14도, 제32조) - 농촌진흥청장이 위해성이 판명된 농약에 대해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
○ 농약사용자 교육에 대한 법에 규정이 없음	○ 농약사용자 교육 및 환경오염 방지 조치 강구(제23조제2항, 제3항) - 농촌진흥청장 등에게 농약사용자에게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,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
○ 농약 판매 기록에 대해 법에 규정이 없으며, 농진청 고시에 고독성 농약을 기록토록 하고 있음	○ 제조·판매업자 등의 농약 제조·수입·판매 내용 기록(제23조의2, 제40조제2항) - 제조·수입·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이름·품목명·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-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
○ 등록·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규정 없음	○ 등록·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검사(제24조) - 농촌진흥청장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·원제업·수입업·판매업 또는 방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농약·그 원료, 관계장부 또는 시설·장비를 검사하고,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함
○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위해성 판정시 등록취소 가능	○ 국제기구, 외국정부, EU 등에 의하여 해당품목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(제14조제2항)